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. 10. 27 선고 2020가단127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말소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10. 27.

판결 선고 2020. 10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임야 1653m²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0. 2. 10. 접수 제20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관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등기 청구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허윤범